

[붙임 6]

철도적성검사 불합격 판정기준

(철도안전법 시행규칙 「별표 13」)

운전업무종사자들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(제41조제4항 관련)

검사대상	검사 주기	검사항목		불합격기준
		문답형 검사	반응형 검사	
3. 영 제21조제3호의 정거장에서 철도 신호기·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	최초 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성 -일반성격 -안전성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주의력 -복합기능 -선택주의 · 인식 및 기억력 -시각변별 -공간지각 -작업기억 · 판단 및 행동력 -추론 -민첩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문답형 검사항목 중 안전성향 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람 · 반응형 검사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인 사람
<p>비고: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문답형 검사 판정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한다. 2. 반응형 검사 점수 합계는 70점으로 한다. 다만,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는 검사항목별 등급으로 평가한다. 3. 특별검사의 복합기능(운전) 및 시각변별(관제/신호) 검사는 시뮬레이터 검사기로 시행한다. 4. 안전성향검사는 전문의(정신건강의학) 진단결과로 대체 할 수 있으며,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일 1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재검사 결과를 최종적인 검사결과로 할 수 있다. 				